
Policy and Law Report _Vol.18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5.22.~5.28.) -

May 30,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5/22~5/28)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금융위원회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제정하여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자문서비스·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社(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이하 ‘가이드스’)를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함 이번 발표한 가이드스는 각 평가기관의 동 가이드스 준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감안하여,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3~24년간 가이드스를 운영한 이후, '25년부터는 가이드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임.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 평가지표 선정 등 구체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Best Practice 제시 ② (성격) 각 기관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 ③ (수준)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ESG 평가의 특성, 국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제시 ④ (구성) 총 6개 章*, 21개 條文 *① 총칙 ②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③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④ 평가체제의 공개 ⑤ 이해상충의 관리 ⑥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2023-05-24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發 불안요인 선제적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작년말 대비 호전된 자금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선제 조치들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용(NCR)도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실질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23-05-24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단기 PF-ABCP를 만기가 일치되는 대출로 전환 유도하여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 -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23.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 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여 전환 유도 -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9조원이 연 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② 부실채권의 신속한 상각 유도 - 적립해 놓은 총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 ③ 기존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 연장 -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연장 -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 ④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 회사규모(종투사-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 <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방향 > <table><tr><th>현행</th><th>개선</th></tr><tr><td> • 종투사-중소형사 등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과 무관하고, • PF 사업장별 위험도*, 변제순위 등 개별 리스크와 무관하게, * 예 : 사업단계, 사업장별 LTV •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위험값 차이만 크게 반영되는 형태 * 예 : [PF대출] 자본차감(실질위험값 100%) [ABCP 채무보증] 18% (무등급 기준) </td><td> • 종투사-중소형사의 실질 위험감내능력과 업무범위의 차이 등과, • PF 사업장 특징·변제순위 등 익스포저의 세부리스크*를 감안하면서, * 예 : 본PF vs 브릿지론 / 저 vs 고 LTV / 선 vs 후순위 •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 최소화 </td></tr></table>	현행	개선	• 종투사-중소형사 등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과 무관하고, • PF 사업장별 위험도*, 변제순위 등 개별 리스크와 무관하게, * 예 : 사업단계, 사업장별 LTV •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위험값 차이만 크게 반영되는 형태 * 예 : [PF대출] 자본차감(실질위험값 100%) [ABCP 채무보증] 18% (무등급 기준)	• 종투사-중소형사의 실질 위험감내능력과 업무범위의 차이 등과, • PF 사업장 특징·변제순위 등 익스포저의 세부리스크*를 감안하면서, * 예 : 본PF vs 브릿지론 / 저 vs 고 LTV / 선 vs 후순위 •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 최소화	
현행	개선					
• 종투사-중소형사 등 회사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과 무관하고, • PF 사업장별 위험도*, 변제순위 등 개별 리스크와 무관하게, * 예 : 사업단계, 사업장별 LTV •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위험값 차이만 크게 반영되는 형태 * 예 : [PF대출] 자본차감(실질위험값 100%) [ABCP 채무보증] 18% (무등급 기준)	• 종투사-중소형사의 실질 위험감내능력과 업무범위의 차이 등과, • PF 사업장 특징·변제순위 등 익스포저의 세부리스크*를 감안하면서, * 예 : 본PF vs 브릿지론 / 저 vs 고 LTV / 선 vs 후순위 •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 최소화					

부처	내용	일시
	<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 <pre> graph TD A[증권사 PF 익스포저 (약27조원)] --> B[증권사보증 PF-ABCP (약22조원)] A --> C[증권사 PF대출 (약5조원)] B --> D[(중소형)증권사 보증이행(인수)] B --> E[정책금융기관 및 중투사 합동 매입기구 (1.8조원)] C --> F[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한 증권업계와 부동산 PF 건전성 우려 증폭 완화] D --> G[유동성 지원] E --> H[조치3 (연장)] F --> I[조치2 (신규)] G --> J[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 H --> K[산업은행 증권사 CP 매입] I --> L[한국은행 RP] J --> M[지속] K --> N[지속] L --> O[지속] </pre> 조치1 (신규) 단기ABCP-> 만기일치 대출 전환 만기 mismatch 및 단기자금시장 잠재불안요인 선제적 제거 연내 4.9조원 전환예상 조치2 (신규) 부실자산 조기상각을 통한 증권업계와 부동산 PF 건전성 우려 증폭 완화 ※ 이와 별개로, 취약증권사별 집중 모니터링 지속 조치3 (연장) 22.11.24일 가동 ~ 5월말 종료 금번 조치로 연장(~24.2월) 조치4 (연장) 시장차환 실패시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22.11.4일) ⇒ 무리한 차환시도에 따른 ABCP 금리 급등 악순환 문제 해결 + 장기보유시에도 위험감 32% 임시적용 금번 조치로 연장(~23.12월) 증권사보증 PF-ABCP (약22조원) 보증채무 증권사보증 PF대출 (약5조원) PF대출 연체율 급등중 (22.9월) 8.2% (12월) 10.4% 증권금융 증권담보대출 유동성 한국은행 RP (14일음) 국공채 특수채 담보 산업은행 증권사 CP 매입 유동성 자구계획 정구 등 한국은행 RP (14일음) 유동성 정책금융기관 및 중투사 합동 매입기구 (1.8조원) 22.11.24일 가동 ~ 5월말 종료 금번 조치로 연장(~24.2월) 유동성 지원 유동성 한은적격채 + 회사채 담보 지속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5.22. 시행) 산업단지 내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으로 한정하던 것을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산업융합 신제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 제30조제2항제4호 등)	2023-05-22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6.11. 시행 예정)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1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됨 이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요구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환경보전원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	2023-05-23
국토 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5.25. 시행, 다만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결합 시정조치계획 등의 공고 방식, 보고 내용 및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검사 실시장면 촬영 방법을 간소화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입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3-05-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정조치계획의 공고 방식 및 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등 개선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3항) -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때에 종전에는 서울특별시내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으로 공고 방식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 부품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의 신속한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 이행방안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도모함 -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폐차 등으로 시정조치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만 보고하도록 보고 의무를 완화함 ② 검사 미 실시 자동차 매수자에 대한 통지 (제77조의2)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자동차검사 미 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③ 자동차 재검사의 편의성 제고 (제80조의3제3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자동차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아니라,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함 -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함 - 등록번호판의 훼손 여부 등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부분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 ④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제96조, 안 별표 21의2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 신설)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검정설비 명세서 및 검정기관의 권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데이터 송·수신 및 운임산정에 관한 검정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검정기관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⑤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간소화 (안 제99조제2항 신설 및 안 별지 제73호서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 이륜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자가 그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함으로써 신고인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5.25. 시행.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자동차 재검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6항, 제6조제2항, 제7조 등)	2023-05-2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법무부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그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종래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 제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3항) ②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고 안 제2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그 원인행위가 발생한 국가배상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중인 국가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 (안 부칙 제2조제3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5/25(목)~7/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국가소송과)로 제출	2023-05-25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 명칭 및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 (안 제2조 제1항) - 현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 실무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익 계산을 위한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는 국가배상에도 적용됨	2023-05-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 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제2항) ②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현행화 (안 별표9) ※ 의견 제시기간 : 2023/5/25(목)~7/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법무부(국가소송과)로 제출	
고용 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도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제4항) ②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함 (안 제18조의3제1항) ③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안 제18조의3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2023-05-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안 제18조의3제7항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⑤ 현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 (안 제19조의2제1항) ⑥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 (안 제19조의2제4항) ⑦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⑧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안 제39조제2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5/25(목)~7/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로 제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 (안 제76조제1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5/25(목)~7/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로 제출	2023-05-25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 (안 제74조제7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5/25(목)~7/4(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로 제출	2023-05-25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결성 주체 및 등록 요건, 투자자의무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 요건 구체화 (안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 소형 모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을 1,000억원 이상,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으로 명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처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 집행조합원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을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으로 설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의 출자 1좌 금액, 유한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존속기간 등 요건 제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검사 사유에 포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일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위임 근거 마련	2023-05-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업무 일부의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위탁 근거 마련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사무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완화 (안 제35조제4항·제6항, 제37조의2제2호·제3호) -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보유제한비율 완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허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60%로 명시 - 운용 편의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관련 창업기획자·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 규정 정비 (안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4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37조의2제1호) - 창업기획자가 결성가능한 벤처투자조합의 범위를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명확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 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제외 - 자펀드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 -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비중, 창업·벤처기업 투자비중 산정대상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외 ④ 개인전문투자자 및 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범위 등 입법 미비사항 해소 (안 제4조,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3조)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중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경력을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861호, 2021. 12. 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일괄 변경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전문인력의 인정 경력에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5/26(금)~7/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로 제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95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에 필요한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023-05-2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 확대 (안 제5조)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범위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포함 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 (안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별지 제11호서식)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주요사항,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 등을 명시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명확화 (안 제24조제7항)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④ 타 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에 따라 ‘초기창업자’ 명칭을 ‘초기창업기업’으로 변경 ※ 의견 제시기간 : 2023/5/26(금)~7/1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u>」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 2007년 이후 GDP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도 해당기간 동안 이미 2배 이상 상향된 바 있음 또한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은 2021년 벤처기업들의 평균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함. 이로 인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규모 중소·스타트업들이 새로 개척한 시장에서 사업 초기 높은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 규제에 의한 경쟁 촉진 효과보다 시장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클 우려가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80억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스타트업 등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	2023-05-24
	• 「<u>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0인)</u>」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 경쟁적 병목현상, 수직적 통합 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입법 공백 중에 온라인 플랫폼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쏠림 현상도 극심해짐에 따라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산업부문을 독점화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며 정보 독점을 통한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2023-05-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난 3년간 6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매출을 달성하거나 직전 연도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이거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사업자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②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③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행위 및 자사 우대행위를 금지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④ 지배적 플랫폼은 광고주가 요청하는 경우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함 (안 제7조) 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신고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8조)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이거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⑧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두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단체소송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로 소제기 건수가 8건에 불과하여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3-05-2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에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며 제조적격단체 사전지정 제도와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자가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0조) ②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③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안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④ 정보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의 원고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2조의2신설) ⑤ 소비자 단체소송은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72조의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납세자의 재산권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다만 현재 용도세율 제도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등 9개 탄력관세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4개 탄력관세제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덤핑방지관세 등 4개 탄력관세의 경우 수입 물품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등 세밀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83조제1항)	2023-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동물보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2항)	2023-05-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 실행 영상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4조의11 신설)	2023-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행정안전 위원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떠한 경우가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부재함 이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의 명확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등)	2023-05-25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발전속도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이용자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된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023-05-22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87%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임. 그럼에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실태 점검 및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쌀값 정상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쌀 생산조정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함	2023-05-25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에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16조의3 신설)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5인)</u>」 현행법은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함 그런데 최근 인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금품을 노린 범죄자에 의해 흥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해 주취자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강력 범죄로 종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야간시간에 각종 범죄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2023-05-22
	• 「<u>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u>」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특히,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육성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관점에서 산업적 중요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민경제 영향 등 검토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요건(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은 불비함	2023-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또한, 유사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지정 심의 시 보호조치를 적용받게 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리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검토 조정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가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검토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에 따른 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함 (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②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신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변경·해제함에 있어, 당해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1조제3항 신설) ④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4항 신설)	
	•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3인)</u>」 세계 주요국의 기술·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이러한 자국 주요 산업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도 국가·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2023-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마땅한 유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소위 브로커 행위를 침해행위의 하나로 추가하고, 해외기술유출 범죄 성립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신설) ③ 정부는 지정된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0조제3항 신설) ④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 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각각 신설) ⑥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 (안 제14조제9호 신설) ⑦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범죄를 그 수준을 강화하여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변경함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미국은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에서 외국인투자가 자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강력한 심사를 통해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전략자산 및 기술분야 기업의 10% 이상, 프랑스는 핵심기업의 10% 이상 지분 또는 의결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에서 국가가 외국인투자보안을 위한 심사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일본경제의 원만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국가 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국가·경제 안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제1호)	2023-05-2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보건복지위원회	• 「<u>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u>」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제품 리뉴얼 때마다 표시사항이 달라지면 동판 수정 및 기존 포장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2023-05-24
	• 「<u>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3상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의약품 시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조건부 허가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품목 조건부 허가가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품목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에 관한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은 매 반기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품목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등)	2023-05-24
	• 「<u>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u>」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2023-05-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란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4조의4 신설)	2023-05-2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3인)」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임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7조 및 제87조의2)	2023-05-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제19호 신설)	2023-05-25
환경노동 위원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2024년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제19126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등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인바, 특히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 제4조의2 신설 등)	2023-05-24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언론 등에서 근로복지시설이 일반 근로자의 복지 증진보다는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지원시설로 사용되거나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용도에 사용되어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3-05-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 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업무영역을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력이 크고 업역이 넓은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진출이 용이한 반면 영세 전문건설업은 종합공사에 필요한 면허보유 곤란, 입찰에 필요한 실적부족, 종합의 높은 등록기준 충족이 곤란하여 입찰참여 자체도 어려운 실정임 종합건설업은 중대형 건설사까지 소규모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등 불공정 경쟁만 가중되어 왔으며,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라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편법 하도급 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며 실제로 2021 2022년도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개방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업계가 교차수주 진출건수가 전문업계에 비해 4배 이상에 달하여 양 업계간 수주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불합리한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를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각 공사업에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사업영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상호경쟁을 유도 및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보호구간 위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성장 발판을 굳건히 하고 지속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5조 및 제29조)	2023-05-22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5/30(화) 14:00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5/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3호 발간 -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	
	5/31(수)	금주의 서평 제630호 발간 - 특권 중산층(저자:구해근)	
	5/31(수)	「World&Law」 제2023-11호 발간 - 내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까?	
예산정책처	5/30(화)	「NABO 2022 연차보고서」 발간	
	5/31(수) 14:00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2차 포럼 개최	비대면 영상회의
입법조사처	5/30(화)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 -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5/31(수)	「NARS 현안분석」 발간 -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별첨1] 제406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일시	구분	내용
교육위	5/31(수) 10:0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국방위	6/1(목) 10:00	전체회의	- 국방부 등 현안보고
문체위	5/30(화) 11:00	문화예술소위	- 법안 심사
	5/31(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등
국토위	5/30(화) 10: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정보위	5/31(수) 14:00	전체회의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정치개혁특위	5/30(화) 10:00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 심사
윤리특위	5/30(화) 10:00	전체회의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0(화) 10:00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1차 - 분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남인순·김성주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30(화) 10:00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장경태 의원실, 지역정당네트워크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30(화) 10:00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김진표·홍영표 의원실, 국회신성장포럼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30(화) 10:00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윤준병 의원실, 한국수자원학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30(화) 14:00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 -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최재형 의원실, (사)온울	의원회관 2소회의실
5/31(수) 09:20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신현영 의원실, 한국희귀질환재단	의원회관 7간담회실
5/31(수) 10:00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사이버보안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5/31(수) 10:00	AI SOUL FORUM 창립기념식 및 특별강연 - AI개발 및 활용 윤리와 글로벌 표준제정 한국내 법제 화를 선도하기 위한 포럼	김민석 의원실, AI SOUL FORUM	의원회관 306호
5/31(수) 10:00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 과 분산에너지 역할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31(수) 10:00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과제 모색을 위 한 토론회	김영진·윤건영·이학영 의 원실, 녹색연합	의원회관 3간담회실
5/31(수) 14:00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조승래·김영식· 김영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31(수) 14:00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강대식 의원실, 국토교통부	국회박물관 2층 강당
5/31(수) 14:00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 기업!	한기호·이헌승 의원실, 대한민국 국방부 등	국회도서관 강당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1(수) 15:00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	황보승희 의원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목) 10:00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	소병훈·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목) 14:00	M&A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목) 15:00	2023 상반기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정기 콘퍼런스 - 지식재산(IP) 감정평가 제도 선진화 방안은?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금) 14:00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최승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5/24(수)	<u>금주의 서평 제629호 발간</u> -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5/25(목)	<u>「현안, 외국에선?」 제59호 발간</u> -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	
입법조사처	5/22(월)	<u>「NARS 현안분석」 292호 발간</u> -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5/23(화)	<u>「NARS Brief 제3호」 발간</u>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와 시사점	
	5/24(수)	<u>「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u> -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5/24(수)	<u>「NARS Brief 제4호」 발간</u> -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출범	
	5/25(목)	<u>「NARS 현안분석」 293호 발간</u> -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5/25(목)	<u>「외국 입법·정책 분석」 35호 발간</u> - 2023년 프랑스 연금개혁과 헌법 제49조제3항 의회표결 생략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22(월) 10:00	<u>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u>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2(월) 14:00	<u>국가 미래산업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u>	박덕흠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2(월) 14:00	<u>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u>	이달곤·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3(화) 10:00	<u>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u> - 지방소멸방지·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무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4(수) 14:00	<u>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의 미래</u>	노용호 의원실, 강원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5/24(수) 14:00	<u>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 책토론회</u>	김정재· 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4(수) 14:00	<u>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u> -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송석준·김정재·최인호 의원실, 대한토목학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5/25(목) 09:30	<u>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 단과 해법</u>	김영선·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5(목) 10:00	<u>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u> - 해양산업 상호 협력체계 구축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5(목) 10:00	<u>현행 국적법 문제와 해결책</u> - 국적자동상실제도를 중심으로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5/25(목) 14:00	<u>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u>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26(금) 14:00	<u>성평등을 향한 여정</u> -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김영주·김홍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5. 지난 주(5/22~5/28)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5/22(월)	금융	<u>“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임박</u> -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는 시사점
5/24(수)	조세	<u>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과세</u>
5/25(목)	지적재산권	<u>특허권 간접침해에 있어서의 전용성 인정 범위의 확대</u> - 특허권자의 선행 특허는 전용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최초의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